

남북경제협력 실무

남북경제협력에 대해 북한진출 및 투자를 희망하는 개인·기업의 실무를 돕고자 KOTRA, 현대경제연구원의 남북경제협력 실무내용에서 발췌해 관심있는 회원사에 도움을 주고자 한다.

- 편집자주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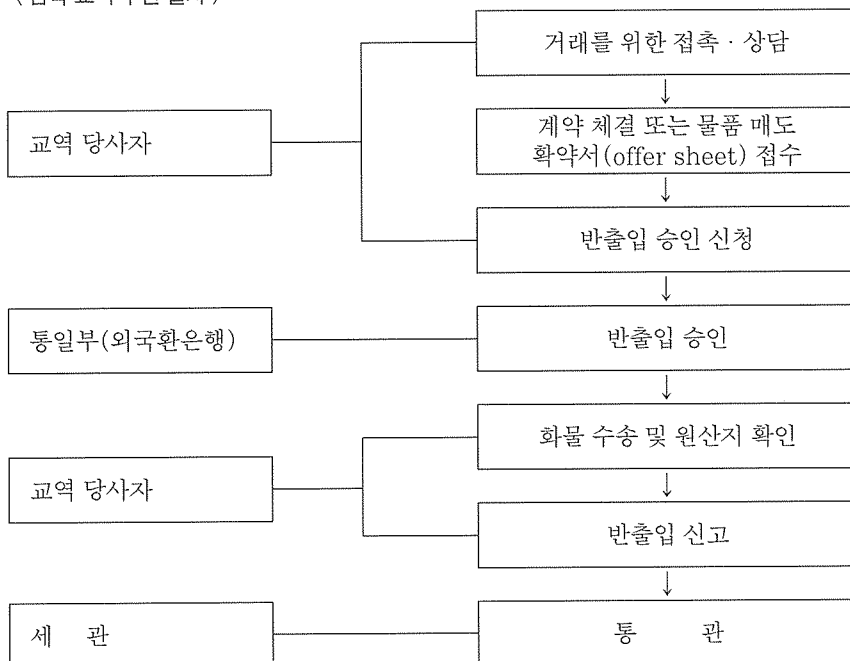
1. 거래선 발굴방법 및 유의사항

1) 제3국의 중개상 활용 방법

북한과의 직접적인 통신 및 정보교환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가장 일반적인 거래 방식

임. 해외중개상은 보통 국내 특정업체와 무역 거래 관계를 유지하다가 부수적으로 북한물품 교역을 제외해 오는 사례가 많음. 최근에는 중국 등지에 북한과의 교역 및 투자알선을 전문으로 하는 자문회사들이 설립되고 있어 이를 활용하는 방법도 있음

〈남북 교역 추진 절차〉



2) 현지법인 및 북한 거래선 활용 방법

홍콩, 중국, 일본 등 제3국에 소재하는 현지 법인을 통해 북한 거래선을 발굴하는 방법도 많이 이용됨. 한약재 등 일부 직교역 품목의 경우 초기에는 중개상을 통해 북한 거래선을 발굴하나 상호 신뢰관계가 구축된 다음 북한상사를 통해 제3의 북한 거래선을 발굴하는 사례도 있음

3) 거래선 발굴시 유의사항

북한주민과의 직접 접촉은 물론 편지, 전신, FAX, TLX, 전화 등 간접 접촉도 통일부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함. 접촉장소는 남북한을 제외한 모든 곳이 가능하며, 중국, 일본, 홍콩 등이 대표적인 접촉장소로 활용되고 있음

2. 남북한 물품의 운송 방법

남북한간의 물자 수송은 제3국적선이 부정기적으로 제3국을 단순 경유 하거나 공해상으로 남북한간 직운항함으로써 이루어짐

1) 제3국적선 이용방법

현재 국내 선박회사에서는 제3국적선을 이용하여 직수송함

삼선해운(Tel : 399-8500),

한성선박(Tel : 771-7367)

2) 북한물품의 남한운송

북한에서 소량으로 물품을 반입할 경우에는 다른 화물이 반입될 때 함께 반입되기 때문에 납기지연과 부대비용 발생함. 남포와홍콩, 홍남과 일본간에는 월 3회 정도 조선대흥선박회사 등 북한선사에서 화물을 직접 운송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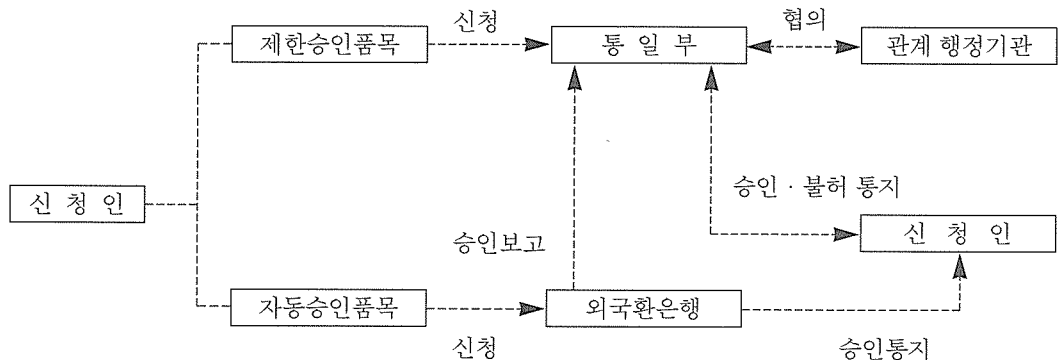
3) 남한물품의 북한운송

남한화물을 북한으로 반출할 때는 선적항을 제3국으로 표기해야 하며, 북한항구에 남한 국적선이 직접 입항할 수 없음

3. 남한 물품의 북한 운송시 유의사항

- 남한 화물의 북한 반출시에는 제3국적선으로 표기해야 하며, 북한으로의 부정기 제3국적 선박의 물색에 따르는 시간 지체 및 부대 비용 부담이 발생함

〈남한물품 반출승인 절차〉



- 컨테이너 항만 시설의 부재 하거나 열악하며 부두 조명 시설의 미비와 전력난으로 인한 선박 입항 시간의 제한(통상 오후 4시 이후 금지) 등을 유의해야 함

4. 반입물품 검사의 일반사항

1) 원칙 : 일반 무역절차와 달리 안보차원에서 선량검사를 원칙으로 하고 있음

2) 검사사항

- 반입되는 물품과 승인받은 물품의 동일 여부
- 반입금지품 여부
- 불순품의 혼합여부
- 수량이나 중량, 원산지 또는 포장상의 차이점 여부

5. 반출입 통관 주요사항

1) 반입 통관

- 세관장은 신고사항을 확인, 일정 요건이 충족되는 경우 반입 허용함
- 원산지가 북한인 반입물품은 무관세입

참고로 원산지 증명서 및 기타 첨부서류 구비조건이 비교적 까다로움

2) 반출 통관

- 반출물품에 대해서도 수출용 원자재의 관세환급 특례법에 의거, 관세 등을 환급함

6. 북한물품 반입승인 신청시 필요사항

1) 기업은 제한승인품목 및 반입승인을 요하는 품목을 사전 확인 후 통일부 승인을 받아야 함. 이외의 품목은 개별적인 승인을 받을 필요가 없음

2) 심사 기준

- 당해품목의 과다공급에 따른 국내시장 교란 가능성
- 국내 생산사 보호 측면
- 반입가격의 적정성
- 남북교역의 확대 · 발전 가능성 및 기타 남북관계 개선에 미치는 영향

3) 제출 서류

- 북한물품 반입승인신청서 5부
- 반입계약서 또는 물품매도확약서(Offer Sheet) 1부
(간접교역시 중개인과 북한상사간 계약서 포함)
- 반입대행계약서 1부 (반입자와 위탁자가 다른 경우)
- 특정물품취급 면허증 사본 1부 (해당자)
- 기타 통일부장관이 정하는 서류
무역업신고증 사본, 사업자 등록증 사본
제한승인품목의 경우 북한물품 반입관련 내역서(소정양식) 각 1부

7. 북한물품 반입승인시 유의사항

- 1) 원산지와 선적지가 동일한 북한산 물품 반입시에는 수입부담금이 면제됨
- 2) 제한승인품목인 북한산 원자재를 수출용으로 반입하는 경우에도 통일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함
- 3) 대금결제방식이 정상결제가 아닌 경우에는 외국환관리법에 의한 정상외결제 인증을 받아야 함
- 4) 거래형태에서 일반거래 형태가 아니더라도 대외무역법상 거래형태별 승인요건에는 해당되어야 함

- 5) 제한승인품목의 반입승인시 통일부는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승인 여부를 결정하기 때문에 승인에 소요되는 기간을 단축하기 위해서는 관련기관과 사전에 협의를 거친후 승인신청하는 것이 유리함

8. 북한 물품의 남한 운송에 필요한 사항

1) 운행 승인

- 남북한간에 수송장비를 운행하고자 하는 자는 통일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함
- 승인 사유 : 남북한 간에 수송장비(국적불문)을 직운행할 경우
- 처리 기간 : 신청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30일 이내

2) 제출서류

- 남북한간 수송장비운행승인신청서 1부
- 운행계획서(운행경위 포함) 1부
(운행경위에는 운행일자, 운송경로, 수송 화물내역, 화주 등을 포함)
- 자동차등록증사본 또는 수송장비의 제원내역서 1부(사용할 수송장비를 확보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확보할 수송장비의 제원과 확보방법 및 기한등을 기재하여야 함)
- 북한과의 운행합의서 등 운행이 가능함을 증빙하는 서류 1부(통일부장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 한함) 선박의 경우, 북한→남한간 부정기운항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운행합의서 또는 북한 당국의 입항허가서 등 증빙서류 첨부
-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제5항의 사항을 증빙하는 서류 각1부
(수송장비 운행요원중 남한주민이 포함되는 경우에는 방북승인을 함께 받아야 하며, 관계행정기관의 장이 정한 소정교육필증

제출)

- 대리인임을 증빙하는 서류 1부(대리신청의 경우에 한함)
- 기타 통일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3) 승인 변경

- 수송장비 운행승인사항 변경승인신청서(소정양식)에 변경사항 해당서류를 첨부하여 승인 유효기간 만료전까지 통일부장관에 제출

4) 운송 실무

- 가격조건은 대체로 FOB입
- 용선이 아닌 경우에는 물품을 제3국에서 환적하여 운송하는 것이 원칙이나 현재는 국내선박회사에서 제3국적선을 이용하여 직수송하고 있음

9. 북한산 식품 반입시의 검사제도

- 1) 검사방법에는 검사내용에 따라 서류 검사, 관능 검사, 정밀 검사 등이 있음

2) 서류검사

- 대상은 외화획득용(수출용 원자재 포함), 자가소비용 원료, 연구조사용, 식용향료제품 검사대상 식품 등, 재질이 스텐레스, 나무, 돌, 유리제인 것
- 제출된 관계서류를 우선 검토한 후 현장에 출장, 제품보관상태, 색, 맛, 냄새 등 부패변질 여부 검사
- 처리기한은 5일

3) 관능검사 대상

- 최초 수입시 정밀검사를 받은 제품으로서 동일사 동일제품을 재수입할 경우 일정기

- 간 관능검사(가공식품: 1년, 자연산물: 3월, 신선과채류: 2월)
- 잔류농약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자연산물(야생식물류 등)
- 표시사항 확인검사(유통기한, 중량, 원료명 표기 등 표시기준 사항, 허위표시, 과대광고 사항 등)
- 제출된 관계서류를 우선 검토한 후 현장에 출장, 제품보관상태, 색, 맛, 냄새 등 부패변질 여부 검사
- 처리기간: 7일

4) 정밀검사

- 농산물 등 자연산물: 잔류농약검사(자가소비용 원료 제외)
- 처음 수입하는 식품
 - o 가공식품: 규격검사
 - o 식품첨가물: 규격검사
 - o 기구, 용기, 포장류: 규격검사
 - o 가공식품 등: 방사능검사
- 최초에 5,000달러 미만 가액으로 반입한 식품 등(수시검사)
- 부적합 판정을 받은 식품(1년동안 검사)
- 서류, 관능검사대상 중 무작위 표본검사 대상인 것
- 위해 정보가 있거나 운송, 보관중 사고발생 식품
- 서류, 관능검사 과정을 거친 후 이상이 없을 시 검체를 채취, 정밀검사 실시
- 처리기간: 25일

10. 북한의 상품 검사 제도

- 1) 북한은 수입품에 대해 수출국의 공인된 품질, 수량검사증을 첨부토록 요구
- 2) 수출품에 대해서도 북한 수출업자는 수출품 선적시에 북한에서 공인된 상품 검

사기관이 발급한 품질, 수량검사증을 첨부하고 있음

- 조선수출입검사국: 수출입 상품의 공적 검사기관
- 조선상품검사국: 일반상품 검사기관

3) 주의 사항

- 북한은 남한상품 반입시 품질보증서를 받지않고 상표 등을 제거토록 요구
- 조선대외상품검사위원회 명의의 원산지 증명서와 조선중앙식품검역소의 식물검역증을 발급하고 있음

11. 북한항 하역시의 주요사항

1) 하역 기준량

- 24시간 연속 淸天 1일당 항별 양적 화물 하역 기준량
- 하나의 선박에 대해 3개 gang(하역 인원 팀 단위의 하나로 약 5-10명으로 구성)을 기준으로 함
- 3개 gang 이상 또는 이하 경우에는 비례하여 1일 하역 기준량을 정함

2) 정박 기간

- 북한의 선박 정박 기간 개시는 선박의 항구 도착 및 입항 수속 완료후 선박의 着岸 여부에 관계없이 하역 준비 완료 통지서를 화주 또는 그 대리인에게 오전에 제출한 경우에는 오후 2시부터, 오후에 제출한 경우에는 翌日 오전 8시부터 계산함
- 단, 토요일 오전중과 국정공휴일 전일 오전중에 하역 준비가 완료되어 통지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翌翌日 오전 8시부터 계산함
- 목적항에 선박 도착 후 불가항력 및 기상 조건의 경우를 제외하고 연합검사가 즉시 실시되지 않으면 48시간후부터 정박 기간

- 을 개시한 것으로 간주. 연합검사에 불합격하면 정박 기간의 개시로 인정치 않음
- 일요일, 국정공휴일, 荒天日(기상 변화로 하역이 불가능한 날)은 정박 기간에서 제외함
- 정박 기간 경과후(체선료가 발생한 때부터) 일요일, 국정공휴일, 악천후 등으로 인한 불하역 시간도 포함하여 연속하는 모든 날을 체선일로 함
- 정박 기간 개시후 선박의 이동시간은 2회째부터 정박 기간으로 계산함. 단, 해상대기중 정박기간이 개시된 경우 해상대기점(假碇泊지점)부터 着岸할 때까지 시간은 정박기간에서 제외함

3) 早出料 및 滯船料

- 선박 회사가 사전에 조선외국인선박대리점회사에 서명하여 제시한 하역 시간표에 따라 계산됨
- 조출료 또는 체선료는 그 금액이 확정된 후 30일 이내에 지불함

4) 船費

- 선박 회사는 조선외국인선박대리점회사의 송금 의뢰에 따라 운항하는 선박에 대한 항비등의 계산액을 지체없이 예탁해야 함

12. 원산지 판정기준

- 1) 완전생산 기준과 실질적 변형 기준 등 일반적인 원산지 판정기준을 원용함
- 2) 완전생산 기준
 - 북한 영역에서 생산한 광산물, 농산물 및 식물성 생산물
 - 북한 영역에서 번식, 사육한 산동물과 이 들로부터 얻은 물품

- 북한 선박에 의하여 채포한 수산물 및 기타 물품
- 북한에서 제조·가공의 공정중에 발생한 설(屑)
- 북한 영역 또는 선박에서 상기 물품을 원재료로 제조·가공한 물품

3) 실질적 변형 기준

- 북한을 포함한 2개국 이상에 걸쳐 생산된 물품의 경우 실질적 변형이 최종적으로 이루어진 국가를 원산지로 함
- 「실질적 변형」이란 당해국에서 제조 또는 가공공정을 통하여 원재료의 세번(細番)과 상이한 세번(HS6단위)의 제품이 생산되는 것임

13. 원산지 증명서 일반사항

1) 원산지 증명서 특징

- 북한 원산지 확인시 관세 면제의 혜택을 받음
- 북한이 북한산을 증명하는 서류로 「산지증명서」를 발급함

2) 기재내용

- 발송인, 수화인, 발행번호, 발행일자, 당해물품의 품명, 수량, 중량, 수송수단, 산지, 수출대상국 등이 기재되어야 함

3) 인정기준

- 국제협약 또는 국제관례에 맞게 작성된 원본일 것
- 원산지증명서 등의 발송인, 수화인 등은 수입승인서(또는 반입승인서)상의 송화인과 일치할 것
- 당해물품 수량 및 중량이 수입승인서(반입승인서)상의 수량 이내일 것

- 원산지증명서는 한글 또는 영어로 작성될 것
- 원산지증명서 발급권한이 있는 기관이 발급한 것일 것

4) 발급기관

- 조선대외상품검사위원회 : 원산, 흥남, 평양, 남포, 송림, 청진, 해주 등 주요 시 산하의 상품검사소에서 대부분의 원산지증명서 발급
- 조선무역은행 : 금괴, 은괴 등 비철금속에 한해 극히 제한적으로 원산지증명서 발급

- o 1회 미화 100만 달러 이상 또는 연간 미화 300만 달러 이상이거나
- o 설비 반출 대금의 30/100 이상을 생산물품이나 가공비로 상계하는 경우
- 대외무역관리규정상의 위탁가공 교역 승인 요령

① 수출승인기관장(외국환은행장)은 수출품목과 수입품목의 품목 분류(HS 10단위)가 동일한 경우에는 수출입공고에서 수출입이 제한된 경우에도 수출입의 승인이 가능함

② 수출입승인기관장은 위탁가공교역에 의한 수출입을 승인한 때에는 수입 유효기간 내에 가공물품을 재수입하고 수입 통관일로부터 30일 이내로 수입면장 사본을 첨부하여 재수입 보고하도록 조건을 부여함

③ 수출입승인기관장은 수출물품을 가공한 후 현지 또는 제3국에서 판매하고자 하는 자에 대해서는 다음 각호의 요건에 적합한 때에 한하여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재수입 조건을 면제할 수 있음

- o 당해 가공물품이 수출입공고에서 수출이 허용되는 품목일 것
- o 당해 가공물품의 수출대금은 당초 수출승인한 외국환은행장을 통해 회수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수입 조건을 면제받고자 하는 자는 현지 또는 제3국에서 판매하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신용장 또는 계약서 등의 자료를 수출입승인 기관장에 제출해야 함

14. 위탁가공 교역의 관련 법규

1) 위탁가공 교역의 정의

- 외국의 저렴한 노동력이나 고도 기술이 이용코자 할 때 활용되는 거래 형태
- 위탁가공 교역은 가공임 지급을 조건으로 가공할 원부자재의 전부 또는 일부를 거래 상대방에게 무상으로 수출하여 이를 가공·수입하는 것으로 흔히 '임가공'이라고 불리워짐
- 시설 제공 유무에 따라, 북한내 공장 시설을 이용하는 '단순 위탁가공'과 국내 설비를 공급하는 '시설재 공급 위탁가공'이 있음

2) 법규내용

가. 남한법규

- 별도 법률없이 대외무역관리규정(제3-2-5조 위탁가공에 의한 수출승인) 준용
- 단 연계교역으로 위탁가공용 기계 장치 설비가 공급될 때 다음 경우는 통일원장관의 승인이 요구(남북한 교역대상물품 및 반출입 승인 절차에 관한 고시, 97-1)
 - o 대응 물품이 반입 제한 승인 품목이거나

나. 북한법규

- 북한은 1992년 10월 제정한 합작법에서 위탁가공 교역의 근거 규정을 마련
 - o 합작기업의 개념을 "북한측 투자가와 외국측 투자가가 공동으로 투자하고 북한이 생산과 경영을 하며 합작계약 조건에 따라 상대측의 투자몹을 상환하거나 이

윤을 분배하는 기업”(합작법 제2조)으로 정의함

- o 합작법 제13조에 “외국투자자의 투자에 대한 상환과 이윤 분배는 합작제품을 기본으로 하며, 쌍방 합의에 따라 다른 방법으로 할 수 있다”고 규정

15. 계약 체결에 포함되는 사항

- 계약서 또는 물품매도확약서 (Offer Sheet)에 일반적으로 포함되는 사항으로 다음의 항목들이 기재되어야 함

- 1) 품명, 규격
- 2) 유효기간
- 3) 선적조건
- 4) 포장방법
- 5) 수량, 단위
- 6) 대금결제조건
- 7) 단가, 금액, 대금결제통화, 중재조건

16. 남북한물품의 반출입 승인시의 주요사항

- 1) 원칙 : 수출입 공고 및 통일부 고시 등의 승인 품목 여부를 확인해야 함
- 2) 수출입 공고 등의 제한승인품목 여부 확인

산업자원부 장관이 고시한 수출입 공고, 별도 공고, 통합공고상에서 수출·수입의 제한이

없는 자동승인품목 이외의 모든 제한승인품목은 통일부장관의 반출입 승인을 받아야 함. 또한 자동승인품목 가운데 통일부가 별도로 고시한 일부 품목을 제외한 모든 자동승인품목은 외국환은행장의 승인을 받음

- 3) 통일부 고시상 승인을 요하는 품목 여부 확인

수출입공고 및 통합공고상 자동승인품목이라 하더라도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반출입 제한승인품목으로 보아 통일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함 (통일부고시)

- 반출물품으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위탁가 공용 기계, 장치, 설비, 물물교환 (Barter Trade), 구상무역 (Compensation Trade), 대응구매 (Counter Purchase)의 형태로 이루어지는 연계교역으로서 대응물품이 반입제한승인품목인 경우, 1회 미화 100만 달러 이상 또는 연간 미화 300만 달러 이상의 반출, 설비반출대금의 100분의 30 이상을 생산물품이나 가공비 등으로 상계하는 경우
- 미술품, 도예공예작품, 우표, 화폐 등 유가증권(이미 사용한 것과 통용되지 아니하는 것)의 반입
- 반입물품중 통일부에서 별도로 고시한 205개 품목
- 무상으로 반출입하는 품목

17. 남한물품 반출승인 신청 제출서류

- 1) 반출 승인 신청서 5부
- 2) 반출 계약서 또는 물품 매도 확약서
- 3) 중개인과 북한 거래 당사자간 계약서(간접교역시)

4) 반출 대행 계약서 1부(공급자와 반출자가 상이한 경우)

5) 기타 통일부장관이 정하는 서류(반입의 경우와 동일)

18. 남한물품 반출통관시 주요사항

1) 반출통관이란 반출 면허의 의미로, 반출통관 희망 기업은 수출통관 사무처리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관장에게 반출 신고서(수출 신고서 양식 사용)를 기재하여 세관장에게 신고하고 반출 면허를 받아야 함

2) 신고인 자격

- 반출은 화주, 관세사, 통관 법인 및 관세사 법인의 명의로 신고하며, 화주란 반출승인서 상의 반출자(반출 대행시는 반출 위탁자)를 지칭함
- 화주가 직접 신고할 수 있는 경우는 관세법 제137조 3의 규정에 의거하여 직접 반출 신고할 수 있음

3) 관세 환급

- 대북 반출 물품은 수출용 원자재의 관세 환급 특례법에 의거하여 관세 등을 환급함
- 단, 대북 위탁가공용 반출 승인 물품이 제조 가공후 국내에 재반입할 것을 전제로 할 경우 관세 환급에서 제외됨

19. 대금결제 방식의 종류

1) 신용장 방식

남북교역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제3국 중개상 앞으로 L/C를 개설함

2) 청산결제 방식

제도적 장치 미비로 아직 이용되지 않고 있음

3) 현금결제 방식

직교역의 경우에 주로 이용되며, 총액의 30% 정도를 선송금하고 물품 인수 후 잔금을 송금함. 주로 일본의 아시카가은행 등 북한이 지정하는 일본은행을 통해 이루어짐

4) 물물교환

환거래 발생없는 상품의 직접 교환거래방식으로, 신용장 개설이 불필요 함

5) 구상교역

남한의 반출업자가 남한물품 반출에 대응하여 북한의 반입업자로부터 북한 물품을 반입함으로써 반출입을 연계시키는 거래 방식으로, 신용장 방식 대금결제 절차(반출의 경우)를 따름

20. 반출입 승인내용 변경신청 주요사항

1) 승인내용 변경 필요시 당초 승인기관에 변경 승인신청을 하여 승인받음

2) 주요 변경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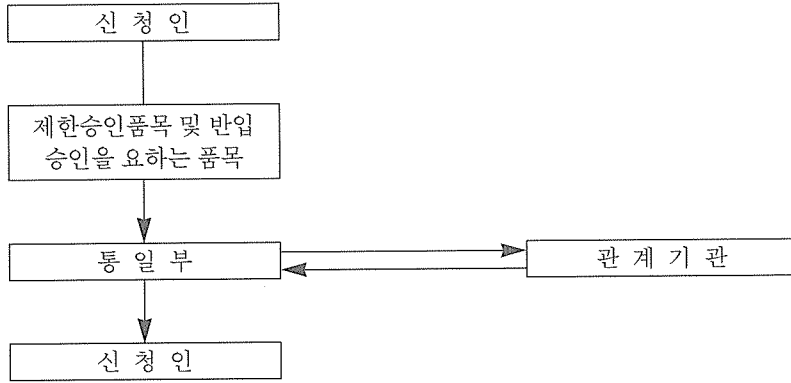
- 금액의 변경
- 대금결제 방법의 변경
- 반출·반입 유효기간의 연장
- 반출·반입 승인조건의 변경

21. 북한 주요항만의 물류여건 비교

	항만의 특성	배후유통체계	항만시설
나진항	-한반도 최북단 不凍港 -천혜의 항만 입지 -러시아 화물의 전이처리항	-북한 최대의 산업 기지(청진공업지구와 김책공업기지 입지) -철도망 -청진-남양-아오지-나진-청진간 순환철도망(두만강-나진-청진은 광궤와 표준궤가 병존) -중국과는 남양을 통해 연결	-부두길이 : 2,515m -최대수심 : 10m -접안능력 : 1만톤 -하역능력 : 300만톤
선봉항	-북한 최대 원유 전용항 -배후에 정유 공장(연간 200만 톤 처리)과 북한 유일의 석유 화학 발전소 위치	-도로망 -총연장 421km의 순환도로망 구비 -나진-두만강-러시아로 이어지는 도로망(43km)	-부두길이 : 455m -최대수심 : 9m -접안능력 : 25만톤 -하역능력 : 200만톤
청진항	-북한 최대의 무역항 -중국의 환동해권 거점항으로 활용	-도로망 -총연장 421km의 순환도로망 구비 -나진-두만강-러시아로 이어지는 도로망(43km)	-부두길이 : 동항 754m 서항 1,384m -최대수심 : 9-10m -접안능력 : 1만톤씩 -하역능력 : 동항 87만톤, 서항 713만톤
홍남항	-홍남공업지구의 관문항 -군항 및 우역항 -홍남공업지구 입지(최대의 화학공업지구)	-철도망 : 평라선과 신흥선, 함흥-서호철도 -도로망 : 강원도, 평남, 자강도 지역과 통하는 여러도로망 구비	-부두길이 : 1,850m -최대수심 : 13m -접안능력 : 3만톤 -하역능력 : 450만톤
원산항	-동해안 최남단 무역항 -관광항의 발전 가능성 -원산공업지구 입지(기계, 조선, 섬유류 등) -만경봉호와 삼지연호가 정기 운항 월 3-4회)	-철도망 : 고원을 통해 평라선과 접속, 함흥-장진, 부전선과 연결 -도로망 : 평양-원산고속도로, 고성-원산고속도로, 원산-온성간선도로, 원산-고산-김화간 2급도로	-부두길이 : 2,520m -최대수심 : 6.1-7.9m -접안능력 : 1만톤 -하역능력 : 170만톤
남포항	-평양 관문항, 갑문항 -북한 서해안 최대 항구 -평양공업지구 입지(기계, 유색 금속 등 중.경공업 발달)	-철도망 : 평남선(평양-남포), 평안선(남포-온천) -하천(대동강) 운수발달 -고속도로망 : 남포-평양간 부설	-부두길이 : 2,000m -최대수심 : 13.5m -접안능력 : 2.5만톤 -하역능력 : 800만톤
해주항	-시멘트 전용항 -휴전선과 근거리 입지 -해주공업지구 입지	-철도망 : 해주-사리원, 용진, 부포, 은빛 -도로망 : 재령, 연안, 벽성 등 여러 방면의 도로	-부두길이 : 1,350m -최대수심 : 12m -접안능력 : 1만톤 -하역능력 : 240만톤
송림항	-광석 전문 처리항(철광석, 유연탄, 철강류 등) -금속공업지구 발달	-철도망 : 송림-황주 -도로망 : 송림-황주, 흑교	-부두길이 : 700m -최대수심 : 7-12m -접안능력 : 2만톤 -하역능력 : 160만톤

주 : 홍남항의 수치는 추정치 임

〈북한물품 반입승인 절차〉



22. 북한물품 반입 통관시 필요사항

- 1) 신고인자격 및 신고요령
 - 화주, 관세사, 통관법인, 관세사법인 등의 명의로 신고해야 함
- 2) 반입신고서 접수시 확인사항
 - 신고서류 기재사항의 착오 또는 누락여부
 - 첨부서류의 완비 여부
 - 사전심사 대상물품 여부 등
- 3) 통관 심사시 확인사항
 - 반입승인사항과 신고사항의 일치여부
 - 대외무역법등 제법령에 의한 조건의 구비여부
 - HS세번의 정확여부
 - 분석의뢰의 필요성 여부 등
 - 반입승인서 수량보다 초과반입된 북한산 물품의 통관
 - 제한승인품목인 경우에는 반입승인량만 우선 통관하고 초과물량은 통일부의 승인을 얻은 후 반입통관 처리하도록 허용
 - 자동승인품목의 경우에는 먼저 전량 통관을 허용한 후 사후에 반입승인서를 정

정·보완하도록 하였음.

4) 반입 신고시 제출서류

- 반입신고서(I/L양식 사용) 1부 - 반입승인서
- 가격신고서(Invoice, 보험증서 포함)
- 선하증권 사본(first B/L, second B/L) - 북한산 C/O
- 최근 2개월간의 선장 확인 선박항해일지
- 기타 검역물품인 경우 검역증 및 세관장이 요청한 서류
- 제3국 단순경유시 선하증권 사본, 선박항해일지
- 북한에서 경유국, 경유국에서 남한까지의 선하증권 일체
- 제3국의 세관 등 권한있는 관공서 발행 단순경유증명서로 대체

5) 관세 및 내국세

- 관세 부과하지 않음. 대북 반출물품의 경우 원재료 수입시 납부한 관세를 환급함
- 부가가치세, 특별소비세, 주세, 교육세 및 교통세는 반입통관시 세관장이 징수함

6) 국내 판매

- 일부 관세가 높은 농수산물을 제외하고는 특별한 법적 제한이 없음

23. 북한산 수산물 반입시의 검사제도

1) 검사기관

- 국립수산물검사소 본소 및 전국 11개 지소

2) 검사대상

- 수산동/식품
- 첨가물이나 다른 원료를 사용하지 않고 원형을 알아볼 수 있는 정도로 단순히 절단, 가열, 숙성, 건조, 염장한 동/식품 포함

3) 검사항목

- 관능검사: 색상(색깔, 풍미, 조직감, 외관) 이물, 활력도, 온도, 냄새
- 정밀검사: 수분, 염분, VBM, 생균수, 살모넬라, 황색포도상구균, 비브리오, 리스테리아, 중금속, 방사능, 항균성물질, 마비성 패류독소(PSP) 등

24. 북한의 대외 항로

- 북한의 무역항은 남포, 흥남, 해주, 송림, 원산, 청진, 나진, 선봉 등 총 8개임
- 북한항의 입항은 한국, 미국, 대만, 남아공 화국 선박을 제외하고는 어느 나라의 선박도 가능함

〈 주 요 항 구 〉

항 로	주 요 항 구
대외항로	북-러 항로 -청진-나진-블라디보스톡-나훗카 (정기 항로) -원산-선봉-나훗카 (유조선, 정기 항로, 610km) -해주-블라디보스톡 (정기 항로)
	북-중 항로 -남포-상해 (중국원양수송공사, 1964. 6. 10, 정기 항로, 1,043km) -해주-상해 (정기 항로)
	북-일 항로 -청진-오사카 (정화해운, 1962. 11. 12, 855km) -남포-동경, 요코하마, 오사카, 고베 (아시아해운, 1962. 12. 26) -청진, 흥남, 남포-고베, 오사카 (영화해운) -청진, 흥남, 남포-오사카, 고베, 도쿄, 요코하마 (동해선박, 1964. 6. 27, 부정기 항로, 855km) -남포-나카사키 (공동통상, 1972. 2. 9)
	동남아 항로 -일본(오사카, 고베, 도쿄, 요코하마)-북한(청진, 흥남, 남포)-홍콩(양광) (부정기 항로, 1964. 12. 24) -일본(오사카, 고베, 도쿄, 요코하마)-북한(청진, 흥남, 남포)-캄보디아 (Hsipbong, Kom-Pongson) (부정기항로, 1965. 2. 13)
	기타 항로 -호주 항로: 북한-아세아-호주 (1967) -중남미 항로: 북한-일본-중남미-기타 지역-헤이요마루

주 : 대외 항로중 북러, 북중, 항로의 ()내는 국별 선박 회사 및 개설 시기이며, 동남아 항로의 ()내는 항구를 표시함

25. 북한 입항 수속 절차

1) 배선 계획 통지 및 입항 허가 신청

- 선박회사는 배선 당해월의 전월 15일까지 조선대외운수회사와 도착항의 선박대리점 회사에 배선 계획을 통지
- 북한항만 도착 10일전에 입항허가신청서를 조선대외운수회사에 제출함
- 그러나, 실제로는 시간 규정에 관계없이 1주일 정도의 여유를 갖고 통지 및 신청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음

2) 배선 계획 변경

- 통지된 배선 계획의 변경시, 선박회사는 원칙적으로 선박의 조선항 입항 7일전에 조선대외운수회사에 통지해야 하나, 다소 조정 가능함
- 변경 통지를 받은 조선대외운수회사는 입항 허가 여부를 48시간(일요일과 국정공휴일 제외) 이내에 전신으로 선박회사에 통지함

3) 입항 허용 기간

- 선박의 입항 허용 기간은 입항 예정일의 전후 2일(합계 5일)로 함
- 입항 허가를 받은 선박이 입항 허용 기간을 경과한 경우의 정박기간은 실제로 하역을 개시한 시간부터 계산

4) 입출항 일시 통지

- 선박회사(또는 대리인)는 선박의 출항일시와 북한항만 입항 예정일시를 출항후 즉시 조선대외운수회사에 전신으로 통지해야 함
- 이 경우에는 확정된 화물명, 수량, 중량, 목적항, 입항 예정 일시, 送하주명, 受하주명을 명백히 함

5) 입항세 납부

- 입항세는 입항 허가 신청과 동시에 조선외국선박사업회사에 연락하여 본선 입항 이전에 동회사의 당해항 지사에 도착하도록 송금함
- 입항세 송금은 북한당국이 지정하는 일본 등 제3국 은행의 계좌를 이용함

26. 상사분쟁(Claim)에 관한 제반사항

- ### 1) 북한은 무역 거래에서 발생한 분쟁 처리를 일반조건의 하나로 상대국과의 무역협정에 명시하고 있고, 이와 별도로 거래계약서에도 명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음

2) 위반 사례

- 납기지연이 가장 많고 뒤이어 품질위반, 수량, 대금결제 순으로 나타남

3) 해결 방식

- 분쟁발생시 먼저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해 해결하도록 하고 해결이 안될 경우 제3자를 통한 중재로써 해결하도록 함
 - 현지주의 원칙에 입각하여 피고의 소재지에서 분쟁 진행함
 - 분쟁 해결을 위해 국제무역촉진위원회 산하에 중재위원회가 설치, 운용됨

4) 유의사항

- 분쟁발생시 중재를 통한 해결이 현실적으로 어려움
 - 중개상과의 계약서에 상사분쟁 조항을 철저히 명기하는 것이 필요

27. 원산지 확인서류 종류

1) 원산지 확인서류

- 북한발행 원산지 증명서
- 상품에 표시된 원산지 표시
- 선하증권 등 운송서류 등

2) 운송방법별 및 거래형태별 확인서류

가. 운송방법별 확인서류

① 직접운송물품

- 북한에서 우리나라로 직접운송된 사실 입증서류(B/L)
- B/L 발행 외국선박의 북한입출항 사실 입증서류(선장확인 항해일지)

② 제3국 경유

- 북한에서 제3국까지의 운송사실을 입증하는 서류(B/L), 적하목록 등 북한 적출사실 입증서류 등
- 선하증권 사본(북한에서 경유국, 경유국에서 북한)
- 경유국의 세관 또는 권한기관이 발급하는 단순경유 증명서로서 세관장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나. 거래형태별 확인서류

- 반입승인서상의 공급자≠원산지증명서상의 수화인: 북한의 반출부터 남한내 반입시까지의 모든 거래관계 서류
- 반입승인서상의 공급자=원산지증명서상의 수화인: 제3국 공급자와 북한상사와의 계약서 또는 Offer Sheet

28. 원산지증명서 제출 면제 사항

- 1) 과세가격(종량세의 경우에는 관세법 제9조의 규정에 준하여 산출한 가격)이 10만원 이하인 물품

- 2) 개인에게 무상송부된 탁송품 및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에 의하여 관세, 부가가치세, 특별소비세, 주세, 부가가치세가 부과되지 않는 휴대품이나 별송품

3) 재반출 조건부 일시 반입물품

- 4) 물품의 종류, 성질, 형상 또는 그 상표, 생산국명, 제조자 등에 의하여 원산지가 인정되는 물품

29. 품목별 반출입 요령

1) 농림축산물

농림축산물은 남북교역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6~7%(반입금액기준) 수준으로 많은 편은 아니지만, 무관세인 북한산 농산물의 대량반입이 국내시장질서와 생산농가보호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을 우려하여 제한적으로 반입이 승인되고 있다. 반입승인 여부는 국내 수급상황, 반입가격, 북한의 생산투명성 등 여러 측면을 검토하여 결정되므로 사전에 반입가능성 여부를 충분히 검토한 후 반입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국영무역 대상품목)

국민의 식생활에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는 곡물로서 수급안정이 요구되는 농산물에 대해서는 농수산물유통공사에서 이를 관리하고 있다. 감자, 양파, 마늘, 고추, 생강, 녹두, 팥, 기타 서류, 녹차, 메밀, 땅콩, 참깨, 참기름 및 그 분획물 등 대부분의 농산물이 이에 해당된다.

이들 주요 농산물의 반입승인을 받는 경우에도 제반 수수료를 포함한 반입 원가로 농수산물유통공사에 인도하여야 하며 반입자의 임의판매가 제한된다.

반입승인시 북한과의 직접계약, 제3국을 경유하지 않는 직접수송원칙 등이 엄격히 적용되며 국내 수급동향, 농수산물유통공사와의 인도조건 협의 가능성 등도 고려 대상이다. 특히, 북한에서의 생산이 지역적으로 부적합한 작물은 중개인을 통해 제3국으로부터 위장 반입될 가능성이 크므로 원산지 확인에 유의하여야 한다.

(당면, 호두)

당면·호두는 원산지 위장 반입, 국내 생산자 보호 등을 위해 '95년 반입승인을 요하는 품목으로 지정하고, 별도의 반입대책에 따라 연간 반입 승인물량 및 승인기준을 정하여 반입을 허용하고 있는 품목이다.

반입승인시 반입가격, 직접계약, 제3국을 경유하지 않는 직접수송원칙 등이 엄격히 적용되며, 반입승인을 받은 물량을 제대로 이행하지 못하였을 경우에는 반입신청자격이 제한되는 등 여러 가지 조건이 부과되고 있다.

당면은 북한도착도방식의 전분공급계약서와 북한의 당면공장에서 생산되었음을 입증하는 객관적인 자료가 제시되어야 하며, 호두는 식물방역법상 수입금지지역인 제3국산 유입을 방지하기 위해 위장반입여부를 엄격히 심사하고 있다.

(축산물)

축산물 반입시에는 국내 검역조건을 만족시켜야 한다. 축산물은 북한의 검역관련 자료를 1차 서류심사하고 우리측 검역관이 현장을 방문조사후 기준에 부합되어야만 반입이 가능하므로 사전에 검역관련 자료의 제공 및 우리측 검역관의 방문가능 여부를 북한측에 타진하여야 한다. 북한산 반입승인은 상기 검역관련 조건을 만족시키는 경우 국내수급 상황 등을 고려하여 제한적으로 결정된다.

2) 한약재

북한산 한약재는 남한과 기후풍토가 같고 비교적 깨끗한 자연환경에서 재배·채취되므로 중국산에 대한 수입대체효과가 높은 교역유망품목 중의 하나이다.

(반입승인을 요하는 품목)

한약재 중 반입승인을 요하는 품목은 한국 의약품수출입협회의 반입(수입)요건 확인후 통일부장관의 반입승인을 받아야 한다.

- ① 원료의약품용으로 반입하는 품목중 요건확인대상 한약재
- ② 고율관세품목 : 건강, 의이인, 산약 등
- ③ CITES 품목 : 사향, 웅담 등
- ④ 수급조절대상품목
- ⑤ 기타 : 건사, 해구신 등

(수급조절 대상품목)

수급조절 대상품목은 반입한도량이 정해진 품목과 정해지지 않은 품목으로 구분되며 반입절차도 각기 다르다.

반입한도량이 정해진 수급조절 대상품목 : 백출, 목단, 지황, 시호, 오미자

반입한도량이 정해진 품목은 한약재수급조절위원회에서 해당품목에 대해 연간 반입한도량을 책정하고, 한국의약품 수출입협회에서 반입요령을 공고하며, 공고된 절차에 의해 반입업체가 선정(입찰방식)되고 있다. 선정된 업체는 직교역 요건을 구비하여 통일부장관의 반입승인을 받아야 한다.

반입한도량이 정해지지 않은 수급조절 대상 품목 : 강활, 구기자, 당귀, 독활, 두충, 백문동, 목단, 방풍, 백작약, 백지, (백)하수오, 산수유, 적작약, (적)하수호, 천궁, 치자, 택사, 향부자, 황금, 황기

반입한도량이 정해지지 않은 품목은 한약재수급조절위원회에서 수급상황에 따라 물량을

배정하여 반입업체가 결정되면 통일부장관의 반입승인을 받아 반입할 수 있다.

3) 수산물

수산물은 남북교역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편은 아니나 최근 반입량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품목이다. 수산물의 경우도 다른 품목과 마찬가지로 반입승인을 요하는 품목과 포괄승인품목으로 구분되어 있으며, 북한산 수산물에 대한 반입제한은 꾸준히 완화되고 있다.

반입승인을 요하는 수산물은 통일부고시로 정하고 있는 8개품목과 수출입공고등에서 수입에 제한을 두고 있는 품목으로 구분된다. 「고시」에서 정하고 있는 8개품목은 생산어민 보호 등을 위해 북한산 반입을 제한하고 있으므로 사실상 교역이 이루어지기 어려운 품목이며, 수출입공고 등에 제한을 두고 있는 품목은 제한요건을 충족시킬 경우 반입승인이 가능한 품목이다.

수산물 교역에서 특히 주의할 점은 품질관리와 제품의 규격화문제 등으로 북한은 냉동시설 부족, 조업여건 불비 등으로 인해 수산물의 선도 유지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며, 상품가치에 대한 인식부족으로 인해 품질규격화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따라서 수산물 교역 시에는 세세한 부분까지 명확한 작업지시를 하여야 하며, 중개인 등을 통해 세밀한 품질확인 절차를 거치는 것이 필요하다.

최근 수산물 교역은 제3국적 임차선박을 이용한 직수송방식의 교역형태가 늘어나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이러한 방식을 이용할 경우 여러 가지 유리한 면이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수산물 반입승인을 요하는 품목(8품목) : 미꾸라지(활어), 홍어(냉동), 새우와 보리새

우(염장·염수장), 가리비(냉동), 오징어(냉동), 낙지(냉동), 꽃게(신선), 꽃게(냉동)

4) 철강금속류, 광산물, 목재 등

철강금속류는 남북교역에서 차지하는 금액 비중이 비교적 높은 품목으로 금괴, 은괴, 아연괴, 마그네사이트, 철강빌레트, 전기동 등이 주요 반입품목이나 최근 북한측의 사정으로 인해 반입이 대폭 감소하고 있다. 광산물은 시멘트, 무연탄, 석재, 고령토 등의 품목에 일부 관심업체가 있기는 하나 교역이 성사되는 경우는 많지 않다.

북한은 남한기업에 광산개발권을 주는 것에 상당한 거부감을 갖고 있으며, 부가가치를 높이기 위해 원광석의 수출을 금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나 전기사정, 설비노후화 등으로 인해 교역량의 대폭적인 증가를 기대하기는 힘들 것으로 보인다.

목재는 버섯재배용 참나무, 홍송 등을 대상으로 반입이 시도되고 있으나 북한의 반출여력이 크지 않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철강금속류, 광산물, 목재 등의 반입에는 특별한 제한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승인절차없이 세관통관이 가능한 물품이다.

5) 예술품, 사진, 우표, 공예품 등

북한 예술품 등을 제3국에서 구입하여 수입하는 방법과 북한에서 직접 구입하여 반입하는 방법이 있으나 어느 경로를 이용하든지 통일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3국에서 수입하는 경우에는 통일부장관의 도안심사를 받아야 하며, 북한에서 구입, 반입하는 경우에는 반입승인을 받아야 한다. 예술품 등의 반입승인여부는 정치성, 이념성 등 내용에 대한 심사에 의해 주로 결정되므로 북한 예술품 등을 교역할 경우에는 이점을 사전에 염두에 두고 작품을 선정하여야 한다.

통일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대부분 전시, 판매 등이 허용되고 있으나, 필요한 경우에는 판매방법, 용도 등을 제한받게 되는 경우도 있으므로 유의하여야 한다.

북한 예술품 등의 교역에서는 특히 작품의 진위여부에 유의하여야 한다. 북한은 최근 외화벌이용 모사작품을 대량제작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므로 작품에 대한 확실한 보증이 없는 경우에는 추후 국내 구매자와 진위여부에 대한 분쟁의 소지가 있으므로 북한 예술품 등을 구입할 경우에는 작가에 대한 소개서 및 북한당국의 작품 보증서 등을 확보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다.

6) 도서, 음반, 비디오물 등

도서 등의 반입은 예술품과 마찬가지로 제3국에서 구입하는 방법과 북한에서 직접 구입하는 방법의 두가지 경로가 이용되고 있다. 다만, 제3국에서 구입하는 경우에는 문화관광부장관의 수입추천을 받아야 하는 점이 예술품 등과 다른 점이다.

도서 등을 반입하여 국내에서 재발간, 상영, 방영, 시판 등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저작권, 판권 등을 확인하고 구입하여야 하며, 이를 명확하게 하지 않을 경우 국내업체간 판권 분쟁이 발생할 소지가 있다. 최근 북한영화 반입과 관련하여 업체간 판권분쟁이 여러건 발생하여 다툼이 진행중에 있음

7) 위탁가공용 물품

위탁가공과 관련된 물품의 반출입은 원자재의 반출, 완성품 반입, 기계·설비의 반출 등

이며, 일반적인 교역과 동일한 반출입절차를 밟아야 한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위탁가공교역품목은 대부분이 수출입에 특별한 제한이 없는 경공업분야의 품목으로서 남북교역에서도 「포괄승인품목」인 경우가 대부분이다. 다만, 원부자재나 완성품이 승인을 요하는 품목인 경우에는 통일부장관의 반출입승인을 받아야 한다.

위탁가공을 위한 기계·설비의 반출은 판매방식, 임가공료 상계방식, 임대차 및 사용대차 방식 등의 형태를 취할 수 있으며, 통일부장관의 반출승인을 받아야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정부는 위탁가공교역 활성화를 위해 기계·설비의 반출에 특별한 제한을 두고 있지 않으나 공급된 설비의 상환을 보장하는 명확한 계약사항 등이 갖추어져 있어야 한다.

8) 협력사업용 물품

협력사업과 관련된 물품의 반출입은 투자물품의 반출과 생산품의 반입 등이며, 원칙적으로 통일부장관의 반출입승인을 받아야 하나 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절차를 간소화하고 있다. 즉, 협력사업을 위한 물품은 수출입에 특별한 제한이 없는 경우 통일부장관에 신고만으로 반출입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9) 무상지원물품

대북한 무상지원물품은 품목, 금액에 관계없이 통일부장관의 반출승인을 받아야 한다. 무상지원의 경우에는 지원의 성격, 지원의 적합성, 지원의도 등이 고려되며, 반드시 담당부서와 사전협의를 거쳐야 한다.